

서울특별시의회  
제299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

2021. 02.

서울특별시의회  
경만선 의원(더불어민주당, 강서3)

□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경 만 선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허가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, 세부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(제16조 제3, 4항)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